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21. 7. 14 선고 2019가단56932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신관

피 고 B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종명

변 론 종 결 2021. 6. 23.

판 결 선 고 2021. 7. 14.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6. 6. 30. 체결된 매매계약을 26,458,567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6,458,567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3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6. 3. 30. C에게 2,500만 원을 변제기를 2017. 3. 29.로 정하여 대여하였고(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고 한다), 2018. 5. 17. C을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당진시법원에 대여금 청구의 지급명령을 신청하였으며, 위 법원으로부터 2018. 5. 24. ‘C은 원고에게 2,25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고 한다)을 받아, 위 지급명령이 2018. 7. 26. 확정되었다.

나. C은 2016. 6. 30. 자신의 처제인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매매대금 2억 9,000만 원에 매도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2016. 7. 14. 피고 앞으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원고는 2018. 3. 30.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당진시법원 2018카단106호로 이 사건 대여금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C 소유의 충청남도 당진시 D 대 189㎡ 외 4필지의 토지에 대하여 가압류(이하 ‘이 사건 가압류’라고 한다)를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8. 4. 3. 이 사건 가압류 신청을 받아들여 가압류 결정을 하였다.

라. 원고는 2018. 10. 24.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하여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E로 이 사건 부동산을 집행장소로 한 동산압류(이하 ‘이 사건 동산압류’라고 한다)를 신청하였고, 2018. 12. 20. 동산압류에 따른 집행절차가 종료되었다.

2.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원고는 C과 피고 사이의 이 사건 매매계약이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원고는 2018. 3. 30.경 이 사건 대여금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C 소유의 토지 5필지(이하 ‘이 사건 가압류 토지’라고 한다)에 대하여 이 사건 가압류를 신청할 당시 또는 늦어도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집행장소로 한 이 사건 동산압류를 신청한 2018. 10. 24.경에는 이 사건 매매계약이

체결된 사실과 이 사건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임을 알고 있었으므로, 그로부터 제척기간 1년이
도과하여 2019. 11. 22.에서야 제기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나. 판단

1)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서 그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은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안 날, 즉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말한다. 이때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를 알고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 것을 요한다(대법원 2018. 7. 20. 선고
2018다222747 판결).

2) 살피건대, 앞서 거시한 증거 및 을 제1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들, 즉, ① 원고는 이 사건 가압류를 신청할 당시 가압류신청서에 C의 등기부상 주소지로 이
사건 부동산의 소재지를 기재하면서 C의 책임 재산으로 이 사건 가압류 토지 이외에 달리 없다는
내용의 진술을 하였던 점, ② 이 사건 부동산은 아파트이고 이 사건 가압류 당시 시가가 2억 5,000만
원 상당에 이르는 반면, 원고가 이 사건 가압류신청서에 기재한 이 사건 가압류 토지의 시가는
7,140만 원에 불과한 점, ③ C은 이 사건 대여금채권이 발생할 무렵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부동산에
거주하고 있으며, C과 오랜 기간 알고 지내던 원고도 이를 알고 있었던 점, ④ 그런데 경험칙상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보전조치를 하면서 채무자가 거주하는 아파트의 등기부등본을
열람해 보지 않은 채 채무자 소유의 토지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이례적인 경우에 해당하는 점, ⑤
원고는 이 사건 동산압류를 신청할 당시 집행 장소로 이 사건 부동산 소재지를 기재하였고, 실제로 이
사건 부동산에 있는 유체동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이 실시되었던 점, ⑥ 그런데 원고가 이 사건
동산압류를 신청할 당시 C의 거주지이면서 유체동산의 소재지인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보전 또는
강제집행을 위해서 등기부등본을 열람하는 등 그 권리관계를 파악하지 않았다는 것은 선뜻 믿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가 이 사건 가압류 신청 당시 가압류 대상에 이 사건 부동산을
포함시키지 않은 것이나 이 사건 동산압류를 신청한 것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이 체결되고 이를 원인으로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됨으로써 이 사건 부동산이 더 이상 C의 소유가 아님을 알고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나아가 앞서 거시한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들, 즉, ① C은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 채권 중 250만 원 이외에 변제를 하지 못하였던 점, ②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대한민국의 2015. 4. 9.자 압류등기가 2016. 3. 2. 말소되었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의 2015. 9. 21.자 압류 등기가 2016. 5. 20. 말소되었으며, 유한회사 F의 청구금액 7,869,200원의 2015. 11. 30.자 가압류 등기(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당진시법원 2015카단322)가 2016. 7. 1. 말소되었고, 대한민국(처분청 예산세무서)의 압류등기가 2016. 3. 22.자 압류 등기가 2016. 7. 14. 말소되었으며,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G의 채권최고액 184,320,000원의 2012. 3. 29.자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근저당권자 H의 채권최고액 28,000,000원의 2013. 10. 23.자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각 2016. 7. 14. 말소된 점, ③ 이 사건 가압류 신청서에는 ‘C의 책임재산이 이 사건 가압류 토지뿐이고, 이 재산마저 선순위 담보 및 다른 채권자들의 압류가 경합되어 있어서 조만간 경매신청이 될 사정이므로 가압류로 배당에 참가할 필요가 있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④ 그밖에 원고가 이 사건 동산압류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고려할 때, 원고는 이 사건 가압류 신청 당시 또는 늦어도 이 사건 동산압류 당시에는 C의 국세, 금융기관 등에 대한 채무액, C의 원고를 비롯한 지인들에 대한 채무액이 C의 이 사건 가압류 토지 등 C의 적극재산 가액을 초과함을 충분히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이 채권자의 공동담보를 부족하게 하는 사해행위이고 C에게 사해의사가 있었음을 알게 된 때로부터 1년이 경과한 이후에서야 제기된 이 사건 소는 제척기간을 도과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므로,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하선화

별지

목 록

1동의 건물의 표시

충남 당진시 동

철근콘크리트조 (철근)콘크리트지붕 21층 아파트

1층 648.8202㎡

2층 596.4989㎡

3층 705.9617㎡

4층 705.9617㎡

5층 705.9617㎡

6층 705.9617㎡

7층 705.9617㎡

8층 705.9617㎡

9층 705.9617㎡

10층 705.9617㎡

11층 705.9617㎡

12층 705.9617㎡

13층 705.9617㎡

14층 705.9617㎡

15층 705.9617㎡

